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103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,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
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
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
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0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재단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재단의 공유재산을 구청장이
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해당 규정 삭제 권고

2. 주요내용

☐ 법률의 위임 없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는 **규정 삭제**

-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

제15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 한다)을
무상사용,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
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
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”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[참조 : 문화관광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전화: 02-3396-4603, FAX 02-3396-8621, oje81@junggu.seoul.kr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관광과 (02-3396-4603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 한다)을 무상사용,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<삭 제>